연구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09. 6. 8
개정 2011.11. 1
개정 2012.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9. 9. 1
개정 2021.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79조에서 규정한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

제2조(정의 및 적용) ① 연구소라 함은 본교 부설기관으로서 본교 내 혹은 외에 설립되는 모든 연구소를 통칭한다.

②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내규 및 시행세칙은 법령,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구분 및 명칭) ① 연구소는 본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성·지원하는 정책연구소와 일반학술연구소로 구분한다.

② 연구소는 그 설립목적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소, ○○연구원, ○○센터 등 적합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소의 설립

제4조(설립기준 및 설치) ① 연구소는 법령,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제 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설립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소는 본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속적 성과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연구소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설치한다.

③ 신설되는 일반학술연구소는 기존연구소가 전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영역의 연구를 행하거나, 기존연구소로서는 불가능한 대외연구비의 획득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본교의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설치한다.

제5조(설립신청) ①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3명 이상이 다음의 서류를 구비, 연구지원센터를 거쳐 총장에게 매년 3월 말일, 9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8, 2014.3.1., 2019.9.1.)

1. 설립취지서
2. 사업계획서(해당 학년도)(개정 2019.9.1)

3. 참여 전임교수 명단 및 교수별 연구실적
4. 연구소의 규정

② 전 항 제4호의 연구소의 규정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사업내용
5.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6.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설립인가) 연구소의 설립인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인가 한다.

제3장 연구소의 운영

제7조(직제 및 조직)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명과 운영위원회를 상설하고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산하기구와 연구업무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원 및 연구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연구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교무위원회에서 심의와 재가를 획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다만, 연구소장 부재 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의 정기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한다.

⑥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운영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연구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1)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를 통할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요원) ① 연구소의 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은 간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재정) ① 모든 연구소는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및 인건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운영경비를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연구소 명의로 수혜한 각종 연구비
2. 설립목적에 맞는 각종 사업비
3. 찬조금과 그 밖의 보조금
4. 본교의 제 규정 혹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한 연구지원비

제13조(지원)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비 및 운영비) ① 연구소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기타 수입금은 관련 법령,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연구소 명의계좌로 은행에 예치한 후 연구비 및 사업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 총 수령액의 일정비율을 연구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비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비에서 일정비율로 제공받은 수입의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사업보고) ① 연구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센터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3.1)

② 연구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센터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4.3.1)

제16조(해산) ① 연구소장은 계속적인 연구사업의 추진이나 연구소의 유지·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에게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연구소장의 해산신청이 있거나 연구소의 연구실적 및 사업내용 등이 극히 부진하여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연구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7조(준용) 연구소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본교의 정관, 학칙 및 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본교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연구소 설립 취지서

1.연구소명칭		2. 신청년월일	20 년 월 일
3.구분(해당란에 ○표)	① 기존연구소( ) ② 신규설립( )		
4.연구소의 설립 위치			
5. 설립취지			

2. 연구소 사업계획(안)

3. 참여 전임교원 명단 및 교수별 연구실적

1. 연구소 명칭				
2. 참여교원 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소속학과	전화번호
발기인(연구소장)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발기인				

3. 연구실적(칸이 부족할 시는 내용 별첨)	
성 명	연구실적 목록

4. 연구소 운영규정(안)